

제266회 영등포구의회
2025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최봉희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11. 21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토보고서

1. 경 과

의안 제632호로 2025년 11월 7일 최봉희 의원 외 6명으로부터
발의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이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
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로 법률명이 변경되고 근거 조항의
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불일치 사항을
정비하고, 구청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
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제명 및 조문 변경사항 반영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규정 신설(안 제1조의2)
- 다. 약칭 및 띄어쓰기 정비(안 제3조 및 제5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입법예고(2025.11.7.~11.13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상위법 제명 및 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, 안 제1조의2에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.

○ 종합의견

-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은 기부금품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금전이나 물품 외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어 동법 제2조를 개정(2024.1.30. 일부개정)하였으며,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동법 제5조를 개정(2023.8.16. 일부개정)하였음.
- 본 조례안에서는 위와 같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인용하고자 하는 조항의 번호가 변경되었기에, 이를 수정하여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여겨짐.

- 이와 더불어 구청장의 책무 규정 신설을 통해 기부 문화 확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기부 참여의 자발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 타당성이 인정됨.

참 고 자 료

1

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기부금품”이란 환영금품, 축하금품, 찬조금품(贊助金品)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, 물품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
가. 법인, 정당, 사회단체, 종친회(宗親會), 친목단체 등이 정관,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·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, 일시금,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

나. 사찰, 교회, 향교,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(信徒)로부터 모은 금품

다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법인, 정당,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

라. 학교기성회(學校期成會), 후원회,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

제5조(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·접수 제한 등)

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,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